

## 편집위원회규정

---

### 제1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회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본 학회의 학회지인 《중국학(中國學)》의 편집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구체적으로 학술지 발간을 위한 논문공모, 논문심사위원 선정, 논문심사상의 모든 절차, 논문제재 최후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 제3조 (위원의 선정 기준)

1. 전국 각 대학 전임강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2.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성취가 탁월한 자

### 제4조 (위원의 선정 절차)

1. 편집위원은 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선정한다.
2. 전공,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의 인원을 추천받아 최종 10명 전후의 인원을 선정 위촉한다.
3. 최종 선정 위촉된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편집위원장으로 선임한다.
4. 학회지 편집의 수준제고를 위해 편집위원회 위원 외에 국내외의 중국학 전문가 가운데 약간 명의 편집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 (위원의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위원회의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학술이사와 협조하여 당무를 주재한다.
2. 매호의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는 3월 31일 발행분은 2월 20일, 6월 30일 발행분은 5월 20일, 9월 30일 발행분은 8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20일에 개최한다.
3. 1차 편집위원회 이후의 위원회는 학회지의 발행 준비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횟수로 소집 개최한다.
4. 편집위원회 간사는 학술지 계재를 위한 논문 모집, 논문심사,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5.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과정 및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6.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은 편집위원장과 간사의 책임하에 진행된다. 편집순서는 특집논

문, 일반논문, 서평, 기타 순으로 배치한다. 일반논문의 경우 어학(고대한어, 현대한어), 중국어교육, 통번역학, 문학(고전문학, 현대문학), 영화/드라마, 문화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사회과학(법/정책, 정치/외교/행정, 경영/경제/관광, 무역/통상, 사회/복지/미디어/교육, 지리/지역)의 순으로 배열한다.

7.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8.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9.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 10.. 논문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기타 사항)**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이상의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 논문심사규정

---

### 제1조 (심사의 취지)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내외의 중국학 학술발전을 촉진한다.

### 제2조 (심사절차 및 일정)

1. 매년 3월 31일 발행분은 2월 20일 심사 의뢰하여 3월 15일 심사 마감,  
매년 6월 30일 발행분은 5월 20일 심사 의뢰하여 6월 15일 심사 마감,  
매년 9월 30일 발행분은 8월 20일 심사 의뢰하여 9월 15일 심사 마감,  
매년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20일 심사 의뢰하여 12월 15일 심사 마감한다.
2. 심사일정은 위 '2'의 '가'를 따르거나,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일정으로 한다.
3. 학회의 사정에 따라 심사 관련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 제3조 (심사위원의 자격)

1. 전국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2.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전공자

### 제4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1. 심사위원은 매호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위원회에서 위 '3. 심사위원의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2. 투고된 논문의 1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장은 'JAMS(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서 선정된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4. 심사위원으로 외국의 학자를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자는 해당 투고자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학술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3. 편집위원장은 심사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출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여 필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제6조 (기피, 회피, 제척)

1. 논문 투고자가 특정한 심사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忌避)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심사자가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심사를 회피(回避)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자가 논문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심사에서 제척(除斥)한다.

### **제7조 (심사의 항목 및 배점)**

1.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5개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계재 여부를 결정 한다.
  - 1) 체재의 적합성 (20%)
  - 2) 논리 전개의 명확성 (20%)
  - 3) 연구내용의 독창성 (20%)
  - 4)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 (20%)
  -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20%)
2. 항목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3.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사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4. 심사항목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 **제8조 (심사의 기준과 절차)**

1. 심사결과는 5개 항목의 평가 기준에 의한 각 평가 점수의 총합으로서 (1) 계재 적합(80 점 이상), (2) 수정 후 계재(70~79점), (3) 수정 후 재심사(60~69점), (4) 계재 부적합(59 점 이하)으로 나눈다.
2. 판정 기준은 종합평가 결과 계재 적합은 3점, 수정 후 계재는 2점, 수정 후 재심은 1점, 계재 부적합은 0점으로 환산하여 심사위원 3명의 종합평가 합산 평점이 9~8점은 ‘계재 적합’, 7~6점은 ‘수정 후 계재’, 5~4점은 ‘수정 후 재심사’, 3~0점은 ‘계재 부적합’으로 한다.
3. 심사위원 3인이 모두 ‘수정 후 계재’ 판정을 내리고, 심사위원 3인의 평가 점수가 평균 75~70점인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단, 평생회원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예외로 한다.
4.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계재 여부를 결정한다.
5.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문서를 통해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7.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계재를 거부할 수 있다.
8. 투고자가 수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할 수 있다.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심사판정
계재 적합 3	계재 적합 3	계재 적합 3	계재 적합 9
계재 적합 3	계재 적합 3	수정 후 계재 2	계재 적합 8

게재 적합 3	게재 적합 3	수정 후 재심사 1	수정 후 게재 7
게재 적합 3	수정 후 게재 2	수정 후 게재 2	
게재 적합 3	게재 적합 3	게재 부적합 0	수정 후 게재 6
게재 적합 3	수정 후 게재 2	수정 후 재심사 1	
수정 후 게재 2	수정 후 게재 2	수정 후 게재 2	수정 후 재심사 5
게재 적합 3	수정 후 게재 2	게재 부적합 0	
게재 적합 3	수정 후 재심사 1	수정 후 재심사 1	수정 후 재심사 4
수정 후 게재 2	수정 후 게재 2	수정 후 재심사 1	
게재 적합 3	수정 후 재심사 1	게재 부적합 0	게재 부적합 3
수정 후 게재 2	수정 후 게재 2	게재 부적합 0	
수정 후 게재 2	수정 후 재심사 1	수정 후 재심사 1	게재 부적합 2
수정 후 재심사 1	수정 후 재심사 1	수정 후 재심사 1	
수정 후 게재 2	게재 부적합 0	게재 부적합 0	게재 부적합 1
수정 후 재심사 1	수정 후 재심사 1	게재 부적합 0	게재 부적합 0
수정 후 재심사 1	게재 부적합 0	게재 부적합 0	게재 부적합 0

### 제9조 (심사결과의 처리)

-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투고자외의 타인에게 언급하지 않는다.
- 논문의 게재 순서는 논문심사 평가결과의 순위와 투고일에 의하여 게재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특정 기관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 호 학술지에서 동일기관의 논문은 총 게재논문의 20%를 넘지 못한다. 이러한 기준을 넘을 경우, 논문심사 평가결과의 순위, 투고일 순으로 게재됨을 원칙으로 한다. 당 호에 게재되지 못하는 논문은 다음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단, 특집논문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게재가 확정된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의 심사단계를 기재한다.
-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이 다음호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논문으로 간주한다.
- ‘수정 후 재심사’ 판정 논문의 투고자가 1차 심사위원의 심사기피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위원을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 (이의신청 절차)

- 투고자의 논문이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에 이의신

청을 요청할 수 있다. 단, 3명의 심사위원 모두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

2.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투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3.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인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하며, 그 결과도 게재불가로 판정되면 최종결과로 확정한다. 또한 게재불가 판정시 재심사의 논문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5. 재심사에서 '게재 적합'으로 판정되면 다음 호로 게재된다.

### **제11조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1. 심사과정, 혹은 게재 이후 표절이나 중복게재, 중복투고의 혐의가 있는 논문은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통보된 논문의 혐의점을 심사하여야 한다.
3.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확인되면 학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재불가 혹은 게재 취소의 판정을 내린 뒤 최소 10년 이상 논문투고 및 학회 학술 활동을 금지한다.
4.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학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 **제12조 (심사위원의 책임)**

1.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때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중복출판, 이중게재)와 표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을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 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게재 부적합' 판정을 내리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심사논문에 불리한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
6. 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으며, 또한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13조 (기타 사항)**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이상의 규정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 논문투고규정

---

### 제1조 (논문의 내용)

1. 중국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과 번역, 서평 및 학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연구 자료를 게재한다. 이 중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갖는 내용과 학술논문의 체재를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한다. 번역은 중국학에 대한 고전적 저술 중 학술적 역주를 갖춘 글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투고논문은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에 게재되지 않은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 제2조 (논문투고의 마감)

1. 논문투고 마감일은 2월 10일(3월 31일 발간), 5월 10일(6월 30일 발간), 8월 10일(9월 30일 발간), 11월 10일(12월 31일 발간)이며,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된 날짜를 우선한다.
2. 마감일 이전에 논문의 투고와 연회비, 심사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마감일을 넘긴 투고논문은 다음 회에 심사를 진행한다.

### 제3조 (논문의 투고)

1. 투고논문에서 저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투고논문'과 <논문투고신청서 및 자체 점검표>를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에 마감일 전에 탑재해야 한다.
2. 저자가 여러 명일 때는 모든 저자가 'JAMS'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3. 동일 필자(공동저자 포함)는 2회 연속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단, 평생회원일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4. 동일 필자는 한 호당 1편(공동연구 포함)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5. 당 호 학술지에서 동일기관의 논문이 총 게재논문의 20%를 넘을 경우, 게재원칙에 의거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 제4조 (논문저자의 자격과 소속, 직위)

1. 논문저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연구자로 한정한다.
2. 석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석사학위과정에 있는 연구자는 단독저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저자의 신분이 교수, 강사, 연구원 등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미성년자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저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5.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참여저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6. 논문저자명의 추가, 삭제, 저자명 순서에 대한 변경은 해당 논문이 출판(인쇄)되기 이전 까지 가능하다. 이때 추가 또는 삭제되는 저자를 포함하는 모든 저자는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1. 투고논문의 공동저자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특수관계인 (特殊關係人)일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단 투고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 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고, 개인정보 제공을 사전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 제6조 (이해상충)

1. 투고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利害相衝)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2. 투고자는 논문투고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논문의 공동저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3.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지체없이 논문투고 취소를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자를 논문에서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이해관계)

1. 이해관계(利害關係)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위원이 논문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저자와 심사자, 편집위원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기피, 회피, 제척하여야 한다.

#### 제8조 (논문의 편집)

1. 논문 파일은 반드시 아래한글(hwp)로 작성한다.
2. 그럼, 삽화, 사진 등이 많이 삽입된 원고는 용량이 비대해져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탑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용량을 줄여서 탑재한다.
3. 편집시 유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출력한 논문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편집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4. 논문편집에 어려움을 겪는 투고자가 학회에 편집을 일임하거나 혹은 논문개재 확정을 받은 논문의 파일이 아래한글(hwp)이 아닐 경우, 논문 편집비용으로 5만원을 청구한다.

#### 제9조 (회원비, 연회비, 심사비, 게재비)

1. 정회원 가입비는 1만원이며, 평생회원 가입비는 40만원이다.
2. 정회원은 논문 투고시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3. 정회원의 논문심사비는 없다. 단 아래의 경우 논문심사비를 청구한다.
  - 1)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 투고할 경우
  - 2) 투고한 논문이 심사위원으로부터 「연구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4.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의 숫자만큼 연회비를 납부한다.
5. 논문개재 확정시 일반논문은 14만원, 연구비 수혜논문은 24만원의 게재비를 입금한다.
6. 논문의 출판지면이 20쪽을 초과하면 1쪽 당 1만원씩 추가한다. 단, 평생회원의 경우, 30쪽으로 한다.
7. 납부된 회원비, 연회비, 심사비, 게재비는 논문의 반려, 철회, 채택불가 등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8. 학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 논문의 연회비, 심사비, 게재비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 (사용언어)

1. 논문의 작성언어는 한글, 중국어, 영어로 한정한다. 중국어 논문의 경우, 간체자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자명과 논문 제목은 영문을 병기해야 한다. 기타 원고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 제11조 (인용문)

원전을 표시해야 하며 외국어의 인용문은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문에도 주석을 가한다.

#### 제12조 (분량)

논문은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논문작성언어가 한글일 경우 15쪽, 중국어일 경우 13쪽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 (초록)

1. 논문 말미의 영어초록은 최소 15줄 이상으로 작성해야 한다. 본문이 영문일 경우 초록은 중국어로 작성하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한다.
2. 논문 말미의 주제어는 5개 이상의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한다. 본문이 영문일 경우 주제어는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한다.
3.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논

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4. 영문원고와 영문초록은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혹은 전문번역기관의 감수를 받은 뒤에 제출한다.

#### 제14조 (논문작성)

1. 투고자는 논문에서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저자명, 소속, 영문초록 저자구분, 저자명, 사사표기,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줄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삭제한 심사용 논문을 탑재한다. 게재 확정이 되면 최종논문에 저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표기한다.
2. 투고논문은 <논문투고규정>과 <원고작성요령>을 따른다. 이를 지키지 않는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3. 논문의 장.절 번호 및 문단, 글꼴, 문장부호 등을 <원고작성요령>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4. 각주는 <원고작성요령>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5. 논문 말미에 참고문헌을 알맞게 제시해야 하며, 본문에서 언급된 논문, 저서만 참고문헌으로 제시한다.
6. 투고된 논문의 오자 및 탈자 등 교정의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 제15조 (논문유사도 검사)

1. 투고한 논문이 '제재 적합' 혹은 '수정 후 제재'를 판정받았을 경우, 논문 작성 언어의 '논문유사도 검사시스템'에서 논문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결과를 다운로드 받아 최종수정본과 함께 'JAMS'에 탑재해야 한다.

논문작성 언어	논문유사도 검사시스템	이용확인서 제출양식	홈페이지
한국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상세결과	<a href="https://check.kci.go.kr/">https://check.kci.go.kr/</a>
중국어	知网期刊职称论文查重 (78元/篇)	文本复制检测报告单 (全文对照)	<a href="https://cnkica.com/cnki/amlc.html">https://cnkica.com/cnki/amlc.html</a>
영어	Turnitin(턴잇인)	디지털 수령증	<a href="https://www.turnitin.com/ko">https://www.turnitin.com/ko</a>

2. '논문유사도 검사시스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투고자 자비로 부담 한다. 중국어 논문유사도 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투고자가 학회에 일임할 경우, 검사비용으로 3만원을 청구한다.
3.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율(5어절 기준, 인용/출처표시문장 포함, 참고문헌 제외)이 10% 이상일 경우,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제재 부적합'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단 유사율이 인용과 출처표시문장으로 인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재 적합'을 판정 할 수 있다.
4.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율이 10% 이하라 하더라도, 연속된 20어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제재 부적합'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5. 게재 확정을 판정받은 논문이 ‘논문유사도’ 검사결과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 논문은 ‘게재 불가’로 최종판정하며, 차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제16조 (논문의 공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학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 혹은 관련 사이버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7조 (저작권 이용동의 및 저자의 책임)**

1. 대한중국학회의 학회지(중국학)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중국학회에 속한다.
2. 논문저자는 저작권을 대한중국학회에 이양하는 학회양식에 의한 동의서를 제출한다.
3.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저작권 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있다.
4. 논문의 출판(인쇄) 이전에 한하여 투고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논문의 조판 중에 철회할 경우에는 학회가 산정하는 조판비용 및 출판지연에 따른 일체의 손해비용을 투고자가 부담한다.

#### **제18조 (기타 사항)**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이상의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 《중국학》 발행규정

---

### 제1조 (명칭)

본 학회지의 영문 명칭은 ‘Chinese Studies’, 한글 명칭은 ‘중국학’, 한자 명칭은 ‘中國學’으로 한다.

### 제2조 (발행처)

학회지의 발행처는 대한중국학회이며, 출판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 제3조 (발행회수)

본 학회지의 발행회수는 연 4회로 한다.

### 제4조 (발행일정)

1. 본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한다.
2. 학술지 발행 일정은 아래 표를 기본으로 한다. 단, 논문투고 마감일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날짜를 우선한다.
3. 학회의 사정에 따라 발행 관련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발행월	3월	6월	9월	12월
논문투고 마감	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
심사위원 선정, 심사의뢰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
심사결과 및 수정지시 통보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원고수정 및 최종본 탑재	3월 23일	6월 23일	9월 23일	12월 23일
수정원고 재심 및 연구윤리위반검사	3월 23일	6월 23일	9월 23일	12월 23일
《중국학》 편집	3월 27일	6월 27일	9월 27일	12월 27일
KCI 등록 및 《중국학》 발행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 제5조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의 표기)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표기한다.

###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 게재 여부는 위원회에 일임한다.
3. 인쇄 전 기타 제반업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 제7조 (회원비, 연회비, 심사비, 게재비)

1. 정회원 가입비는 1만원이며, 평생회원 가입비는 40만원이다.
2. 정회원은 논문 투고시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3. 정회원의 논문심사비는 없다. 단 아래의 경우 논문심사비를 청구한다.
  - 1)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 투고할 경우
  - 2) 투고한 논문이 심사위원으로부터 「연구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4.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의 숫자만큼 연회비를 납부한다.
5. 논문게재 확정시 일반논문은 14만원, 연구비 수혜논문은 24만원의 게재비를 입금한다.
6. 논문의 출판지면이 20쪽을 초과하면 1쪽 당 1만원씩 추가한다. 단, 평생회원의 경우, 30쪽으로 한다.
7. 납부된 회원비, 연회비, 심사비, 게재비는 논문의 반려, 철회, 채택불가 등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8. 학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 논문의 연회비, 심사비, 게재비는 면제할 수 있다.
9. 학회지 발간 후 학회는 저자에게 학회지 1권과 별쇄본 20부를 우편 발송한다. 별쇄본의 추가인쇄를 요청할 경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10. 회원주소 변경 시 반드시 본 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착불로 재발송한다.
11. 학술지 수령주소는 국내만 가능하며, 해외배송은 하지 않는다.
12.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서 논의하고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제8조 (기타 사항)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이상의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 원고작성요령

---

### 1. 논문작성양식샘플

- (1)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술지’ 메뉴에 등록된 「논문작성양식샘플」 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2) 중국어문으로 작성한 논문은 「논문작성양식샘플 - 중국어」를 사용한다.
- (3) 논문 투고자는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에 형식적 수정을 가할 수 있다.

### 2. 원고작성 프로그램

- (1) 원고는 반드시 ‘아래한글’(HWP)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010 버전 이상)

### 3. 공동저자 표시원칙

- (1)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투고신청서 및 투고논문 첫 페이지에 연구공현도에 따라 ‘제1 저자’와 ‘교신저자’, ‘참여저자’ 등을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 (2) 저자를 각주로 처리할 때에는 제1저자의 소속과 이메일을 위에 기재하고, 아래에 교신 저자, 참여저자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 (3) 저자와 저자 사이는 가운데방점(·)으로 구분한다.  
예) 강대한·박한국 또는 강대한·박한국·김민국 등

### 4. 초록과 키워드

- (1) 초록과 키워드 : 논문 첫 페이지에 논문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8줄 이상 10줄 내외의 초록과 5개 이상의 키워드를 작성한다. 초록의 분량은 가급적 논문의 첫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2) 영문초록과 키워드 :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영문으로 최소 15줄 이상 분량의 초록과 5개 이상의 영문·중문 키워드를 작성한다. 초록의 분량은 가급적 논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울러 저자의 성명도 함께 병기한다. (논문 본문이 영문인 경우, 중문 또는 국문 초록 작성 및 국문·중문 키워드 작성)
- (3) 논문 본문의 언어에 따른 초록과 키워드의 언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문 국문 : 국문초록+키워드 / 영문초록 + 중문·영문 키워드
  - ② 본문이 중문 : 중문초록+키워드 / 영문초록 + 국문·영문 키워드
  - ③ 본문이 영문 : 영문초록+키워드 / 국문 또는 중문초록 + 국문·중문 키워드

### 5. 편집용지의 설정

- (1) 편집용지는 A4로 하고, 위 38.5, 아래 38.5, 왼쪽 35, 오른쪽 35, 머리말 10, 꼬리말 0의

여백을 두며, 머리말, 쪽수 등은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일괄 삽입한다.

## 6. 본문 작성요령

<표> 본문 작성요령 (스타일별 글꼴과 속성)

항목	글자		줄간격	정렬방식	첫줄	자간
	크기	모양				
논문제목	17pt	진하게	140	가운데	보통	-8
부제목	13pt	진하게		가운데	보통	-8
필자명	12pt	진하게		오른쪽	보통	-8
목차	제목 10pt	진하게	160	가운데	보통	-5
	내용 10pt	보통		양쪽혼합	보통	-5
사사, 소속	9pt	보통	135	양쪽혼합	내어쓰기 13.1	-3
초록	11pt	보통	165	양쪽혼합	들여쓰기 10	-8
키워드	11pt	보통	165	양쪽혼합	들여쓰기 10	-8
장제목 1)	14pt	진하게	160	가운데	보통	-8
절제목 1)	13pt	진하게	160	왼쪽	들여쓰기 10	-8
소절제목 (1)	12pt	진하게	160	왼쪽	들여쓰기 10	-8
본문	11pt	보통	165	양쪽혼합	들여쓰기 10	-8
인용문	10pt	보통	165	양쪽혼합	들여쓰기 10	-8
각주	9pt	보통	135	양쪽혼합	내어쓰기 -13.1	-3
표/그림	제목 10pt	보통	160	가운데	보통	-5
	내용 9~10pt	보통	160	가운데	보통	-5
참고문헌	제목 14pt	진하게	160	가운데	보통	-8
	내용 10pt	보통	160	양쪽혼합	내어쓰기 30	-8
영문초록 (맑은고딕)	키워드 10pt	보통	160	양쪽혼합	보통	-5
	제목 10pt	진하게	160	가운데	보통	-5
	필자 10pt	보통	160	오른쪽	보통	-5
	내용 10pt	보통	160	양쪽혼합	보통	-5
	저자표시 10pt	보통	160	양쪽혼합	보통	-5
	작성일 10pt	보통	160	가운데	보통	-5

- (1) 본문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 가운데 하나를 쓰도록 한다. 중국어 논문 작성에 있어서 번체자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간체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 내용의 순서는 논문 제목, 성명(소속 및 직위는 주석처리), 목차, 국문초록, 키워드,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중문·영문 키워드 포함), 성명, 논문투고일 등의 순서로 한다.
- (3) 투고된 논문의 연구비 출처 사항은 본문 1쪽 논문제목 옆에 \*로 각주 표시한다.
- (4) 논문을 작성할 때에 국문은 신명조, 중국어문(간체·번체)은 SimSun, 일본어문은 신명조약자의 글꼴을 사용하며, 각 부분별 글꼴과 속성은 위의 <표>와 같다.
- (5)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논문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

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언급도 피한다.

예) 拙稿 XXX 혹은 拙著 YYY

- (6)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만 사용하며,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리얼리즘(现实主义)

- (7) 외국 인명과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처음에 나오는 단어에 한하여 한글로 적고 괄호로 표기 한다.

예) 산시성(陝西省), 시진핑(習近平)

## 7. 인용문

- (1) 인용문은 출처와 함께 쪽(페이지) 번호를 각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2) 직접인용 : 관련 논문의 내용을 맞춤법 하나 바꾸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는 본문 속에 큰따옴표(" ")로 표시해서 넣고, 내용이 긴 경우는 본문에서 분리해서 새로운 단락으로 적되 인용문임을 알 수 있도록 인용문 위와 아래에 1행을 띄우고 글자를 본문보다 1포인트 작게 한다. 새로운 단락으로 적을 때는, 큰따옴표 등의 별도 표시는 필요 없다.
- (3) 간접인용 :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연구자의 말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재인용 : 인용은 1차 출처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1차 출처를 참고할 수 없을 때는 타인이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다. 이런 경우 출처와 함께 재인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8. 각주

- (1) 주석은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표시되는 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본문 중에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괄호(예. 김대한2021)로 묶어 표시하는 내주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한다.  
예) (김대한2021)
- (2)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장)을 초과하는 각주는 가급적 본문 중에 편입하도록 한다.
- (3)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문헌인 경우, 논문 본문의 언어와 관계없이 논문명은 훌낫표(''), 저서명 또는 학술지명은 겹낫표(『』)로 표시한다.
- (4) 영어 문헌인 경우, 논문 본문의 언어와 관계없이 논문명은 큰따옴표(" "), 저서명 또는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5) 한 페이지만 인용한 경우에는 'p.13'과 같이 해당되는 페이지를 표기하고, 두 페이지 이상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처음과 마지막 페이지를 'pp.13-15.'와 같이 표기한다.

- (6) 각주에서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7) 각주 문헌은 필자명, 논문명(『』), 저서명 또는 계재학술지명(『』), 권호, 출판사 또는 발행처, 발행연월, 페이지의 순으로 표기하되, 문헌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해서 표시한다.

&lt;표&gt; 각주문헌의 표시 (인용 페이지 필수)

단행본 (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민국 · 박한국, 『한국의 역사』, 대한출판사, 2016, pp.115-120.</li> <li>■ 陈望道, 『修辞学发凡』, 复旦大学出版社, 2020, p.101.</li> </ul>
단행본 (번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찰스 리, 박한국 역, 『美国的历史』, 대한출판사, 2016, p.115.</li> <li>■ 路易斯·贾内梯, 焦雄屏 译, 『认识电影』, 浙江文艺出版社, 2021, pp.76-78.</li> </ul>
논 문 (학술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한국, 「현대인물연구」, 『중국학』, 제54집, 대한중국학회, 2016.03, p.115.</li> <li>■ 姜大韩·李中国, 「西游记研究」, 『中国学』, 第55辑, 大韩中国学会, 2016.09, p.8.</li> </ul>
논 문 (학위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민국, 「루쉰연구」, 대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115.</li> <li>■ 李中国, 「论中国城市化」, 中国农业大学, 博士学位论文, 2020, p.80.</li> </ul>
연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대한·김민국, 「중국 게임산업 정책」, KOCCA포커스 통권 XX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01, p.22.</li> <li>■ 대한리서치, 「2020 콘텐츠산업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출판사, 2021.06, p.2 09.</li> </ul>
학술대회 자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대한, 「디아스포라와 다문화주의」, 대한중국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 021.06, p.88.</li> </ul>
신문 및 잡지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대한, "중국학 연구의 경향", 『대한일보』, 2021.06.30.</li> </ul>
인터넷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중국학회, 추계연합 학술대회 개최", 『부산외국어대학교 공식블로그』, 2020. 12.04., <a href="https://blog.naver.com/bufsblog/222162741910">https://blog.naver.com/bufsblog/222162741910</a> [2021.10.20.]</li> <li>■ "大韩中国学会春季国际学术大会召开", 『釜山日报』, 2021.06.30., <a href="http://www.daehanchi.org">http://www.daehanchi.org</a> [2021.07.30.]</li> </ul>

- (8) 인터넷 자료는 (저자), “글제목”, 『사이트 명』, 등록일자 순으로 표기하고, 이어서 자료의 확인이 가능한 URL 주소와 [자료 확인 날짜]를 기입한다. 이때 URL 주주소가 두 줄 이상으로 긴 경우 대표주소만 기입하는 등 간략하게 표시한다.
- (9) 문헌의 저자가 3인 이하인 경우 저자명을 모두 기입하고 가운데방점(·)으로 구분한다.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주 저자명만 기입하고 그 외 저자는 ‘외’로 표기한다.
- ① 저자가 3인 이하인 경우:
- 예) 姜大韩 · 金民国, 『韩国现代史』, 大韩出版社, 2020, p.105.  
 강대한 · 박한국 · 김민국, 『한국의 역사』, 대한출판사, 2004, pp.23-24.
- ②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
- 예) 강대한 외, 『중국문학사』, 대한출판사, 2004, p.24.

## 9. 표와 그림

-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며 작은 괄호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의 번호 및 제목은 표와 그림의 상단 가운데에 정렬한다.
- 예) <표1> 대한중국학회 원고작성요령

## 10. 참고문헌 표시원칙

- (1) 본문에서 언급된 논문, 저서 등만 참고문헌으로 제시한다.
- (2) 참고문헌은 문헌의 성격에 따라 먼저 단행본, 논문(학술논문, 학위논문의 순서), 기타자료(연구보고서, 학술대회자료집, 신문, 잡지기사 및 인터넷 자료 등의 순서)의 순서로 먼저 배열한다.
- (3) 다음으로 국문, 중문, 일문, 영문 등의 순서로 배열하되 저자, 연도, 논문명(저서명)의 해당 언어 자모순(가나다, 한어병음, 오십음, 알파벳)의 순서를 따른다. 동일한 저자의 글이 여러 편 있는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배열한다.
- (4) 동일한 저자가 연이어 반복되는 경우 두 번째부터는 ‘\_\_\_\_\_’의 형태로 표기한다.
- (5)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문헌인 경우, 논문 본문의 언어와 관계없이 논문명은 훌낫표(『 』), 저서명 또는 학술지명은 겹낫표(『 』)로 표시한다.
- (6) 영어 문헌인 경우, 논문 본문의 언어와 관계없이 논문명은 큰따옴표(“ ”), 저서명 또는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7) 참고문헌은 필자명, 논문명(『 』), 저서명 또는 계재학술지명(『 』), 권호, 출판사 또는 발행처, 발행연월의 순으로 표기하되, 문헌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해서 표시한다. 인용페이지는 표기하지 않는다.

<표> 참고문헌의 표시 (인용페이지는 표시하지 않음)

### <단행본>

- 강대한, 『서유기』, 대한출판사, 2017.  
 강대한·박한국, 『중국학 새연구』, 대한출판사, 2015.  
 \_\_\_\_\_, 『중국학의 길』, 대한출판사, 2021.  
 李 贽, 『西游记校注』, 里仁书局, 2000.  
 路易斯·贾内梯, 焦雄屏 译, 『认识电影』, 浙江文艺出版社, 2021.  
 吴承恩, 『西游记』, 上海古籍出版社, 2004.  
 \_\_\_\_\_, 『西游记』(上下), 中华书局, 2008.

### <논문>

- 강대한, 「서유기 연구」, 『중국학』, 제55집, 대한중국학회, 2016.  
 김민국, 「루쉰연구」, 대한대학교 박사논문, 2000.  
 姜大韩·李中国, 「西游记研究」, 『中国学』, 第55辑, 大韩中国学会, 2016.

李中国, 「论西游记」, 复旦大学博士论文, 2020.

C. Ace, "The Korean College Students",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Vol.8(25), 2015.

<기타자료>

대한리서치, 「2020 콘텐츠산업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출판사, 2021.

김민국, 「디아스포라와 다문화주의」, 대한중국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21.

강대한, “21세기 중국학 연구의 경향”, 『대한일보』, 2021.06.30.

강대한, “21세기 중국학 연구의 새로운 경향”, 『차이나 테일러』, 2021.06.30., <http://www.daehanchi.org> [2021.06.30.]

“大韩中国学会春季国际学术大会召开”, 『釜山日报』, 2021.06.30., <http://www.daehanchi.org> [2021.07.30.]

※ 한중일 참고문헌의 경우, 논문명은 홑낫표(「」), 저서명 또는 학술지명은 겹낫표(『』)로 통일하며, 인용페이지는 표기하지 않는다.

## 11. 기타사항

- (1) ‘아래한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는 벽자나 기호 등을 직접 제작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원본과 동일한 출력결과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원본 출력본 1부(PDF, 사진 등)에 해당 부분을 표시해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이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일괄 조정한다.

##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규정

---

제정 2007. 09. 01

개정 2020. 01. 01

개정 2021. 05. 01

대한중국학회의 회원은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다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조 (표절의 금지)

1. 표절이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결과나 의견을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면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 제2조 (자기복제의 금지)

1. 자기 복제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
4. 연구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으면, 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5.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결과가 이미 연구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7.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 제3조 (연구자료의 변형, 조작 등 금지)

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조 (공동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참여저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5.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제5조 (이해상충)

1. 투고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利害相衝)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2. 투고자는 논문투고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논문의 공동저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3.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지체없이 논문투고 취소를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자를 논문에서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 (이해관계)

1. 이해관계(利害關係)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위원이 논문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저자와 심사자, 편집위원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기피, 회피, 제척하여야 한다.

### 제7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1. 특수관계인(特殊關係人)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야 한다.
2. 투고논문의 공동저자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단 투고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4.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대한중국학회의 학회지 《中國學》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편집이사, 학술이사를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제보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이의신청, 최종판정, 연구자 및 관계기관 통보의 단계로 진행하되 전체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 ②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

여 실시한다.

- ③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20% 이상을 본 학회 외부의 인원으로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13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14조(기피, 제척,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시 기피 신청된 위원은 배제한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와 의결, 조사에서 제척(除斥)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이나 조사위원은 회피(回避)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5조(진술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조사에 대한 기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윤리규정 위반 내용 혹은 및 제보내용
  - 2) 조사대상인 논문, 자료, 보고서
  -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
  - 4) 조사결과 및 관련 근거자료 및 증인
  - 5) 위원회 참여명단 및 징계 내용
6.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2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위원회는 대상 논문의 학술지 수록·출판을 막론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 제17조 (징계의 절차와 수위)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이 확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논문투고 자격과 향후 학회 학술활동을 최소 10년 이상 금지한다.
3. 본 학회 홈페이지와 학회 회원들에게 위반사실을 공지한다.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 제18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 제19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 조사위원, 혹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혹은 조사 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연구윤리확인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